

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231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피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길

변 론 종 결 2023. 7. 20.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C 사이에 2019. 10.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주식회사 B와 C 사이에 2019. 11.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6,303,01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6,303,018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와 대출금액 1억 원, 이자 연 2.95%, 지연배상금율 연 12%, 원금 상환은 2년 동안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상환기일에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고, E의 대표이사인 C은 같은 날 E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0. 18. 접수 제393337호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2019. 10. 18.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8,917,707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8. 접수 제442924호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2019. 11.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근저당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1근저당권설정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17,033,249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근저당설정등기'라 하고, 위 1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72,714,571원¹⁾ 상당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G은행(인천가좌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0,000원,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0,000원, G은행(등촌동지점)에

대한 대출금채무 14,560,000원 및 50,000,000원, I에 대한 대출금채무 30,000,000원, J에 대한 대출금채무 16,000,000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72,020,000원, K에 대한 보증채무 11,426,000원 합계 254,00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그 후 E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21. 2. 19.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C은 위 다.항 기재 각 대출금채무 등에 대해 2020. 2. 17.경 무렵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 5. 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77,906,743원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다.

마. 원고는 2021. 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카단10060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75,623,515원의 가압류결정을 받고, 2021. 1. 19.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2021. 2. 2. 인천지방법원 2021카단100479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날 위 각 근저당권가처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L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D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21. 9.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519,001,001원에 매각됨으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사. 경매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마지막 5순위로 66,303,018원을 배당하고,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2. 11. 28.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국토교통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F의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들의 채권자취소권 소멸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처분행위 이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행사시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억 원이었고, C의 채무 합계는 646,586,968원이었으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2021. 9. 기준 시가는 7억 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11.경 519,001,001원에 매각되었고, 2022. 11. 24.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 관련 C의 채무 합계가 위 매각대금을 초과하여 3순위 근저당권자 피고 A는 C에 대한 채권의 96.21%만 배당받았고,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와 가압류권자인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여전히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 물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을 뿐, C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알 수 없었고 C이 연대보증한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들이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피고 A는 68,917,707원, 피고 B는 117,033,249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제1 내지 6, 10호증),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자료(을 제7 내지 9, 12, 13호증), C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11호증)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에 불과한데, 피고들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A에게 66,303,018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액은 2021. 5. 3. 기준으로 77,906,74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66,303,01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6,303,018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나

1)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4억 원 -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27,285,429원(=1순위
근저당권자 G은행 177,760,000원+2순위 근저당권자 인천신용보증재단 149,525,429원)